<표 5>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 관한 법률

구 분	내용
국토기본법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	제5조의2(지속기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기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기능성을 측정·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《개정 2013.3.23.>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·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《개정 2013.3.23.>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·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한다.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기능성을 측정·평가할 수 있다. 《개정 2013.3.23.> [전문개정 2011.5.30.]
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·평가 등	제1조의2(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・평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·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《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·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《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·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《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·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《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	제3조의2(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(교육시설, 문화체육시설,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)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. 《개정 2015.12.29.》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《개정 2015.12.29.》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・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 《개정 2011.4.14.》 [전문개정 2009.2.6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절차	제4조의4(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·절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 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《개정 2016.5.17》 1. 지속가능성 평가기준: 토지이용의 효율성, 환경친화성, 생활공간의 안전성·쾌적성·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. 생활인프라 평가기준: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, 이용의 용이성·접근성·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2. 작물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자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며,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. 《개정 2016.5.17.》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, 「국가단형발전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 《개정 2016.5.17.》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《개정 2016.5.17.》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	제51조(관계기관의 협조)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미런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한다.